

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증시험 인력 및 장비(제36조제1항 관련)

인 력	장 비
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소음·기계 또는 자동차 검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1명	1.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다만,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IEC 60651에서 정한 Type I을 만족하는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2.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3. 회전속도계 1대 4.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는 시험도로 또는 1km 이상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주행 시험로

참고

1.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검사·인증시험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